

## 【사건번호 2023-054】 경찰청 범죄 사건별 원시데이터 사건

### 1. 개요

- 피신청인: 경찰청
- 대상 공공데이터: 범죄 사건별 원시데이터
- 신청목적: 학술연구 목적

### 2. 신청취지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\*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.

\* 범죄사건별 원시데이터 제공요건 및 항목 : (기간) 2011년부터 2022년 기준 전국 단위 범죄 사건별 데이터(기준 시점 :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개정 전후 5년 단위, 총 12년), (파일형식) CSV 형식, (분석단위) 범죄 사건별 원시데이터, (제공 조건) 가명·익명 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변수 제공(필수 제공 변수, 추가 제공 변수)

### 3. 조정내용

#### 가. 조정결정 사항

-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이 이유있다. 다만, 공익성을 갖는 학술 연구 목적의 공공데이터제공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.

#### 나. 조정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‘공공데이터법’이라 한다)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.
- 이 사건 데이터는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(이하 ‘형사절차전자화법’이라 한다)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 ‘공공데이터’에 해당된다.
-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「정보공개법」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공 대상 데이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,

-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“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”인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바,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.
- o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신청 요건과 관련 법령,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, 기타 사실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, 사건 데이터가 형사절차전자화법상 ‘형사사법정보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,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보았다.
- o 다만, 이 사건 데이터인 ‘범죄 사건 데이터’는 국민의 수요가 높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목적이 공익성을 갖는 학술 연구 목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권고한다.

#### 4. 조정결과

-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